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3.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2월 2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2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4년 3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가. 제정이유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안 제2조)
-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9조)
 -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구성한다(안 제4조제1항)
 -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안 제4조제2항)
 - 직능별 정수를 구의원 3인, 구 공무원 3인,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식전과 경험이 있는 자로 19인 이내(안 제4조 제3항)
-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1분과 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기획단은 4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5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안 제11조제1항)
 -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 도시계획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안 제12조 제1항, 제2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정수조례에 의한다.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법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 1년 미만인 경우 토지가격의 3/100, 200만원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토지가격의 5/100, 300만원 이하
 - 2년 이상인 경우 토지가격의 10/100, 500만원 이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을 신중히 처리토록 그 기능을 보완하고, 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로 확대 구성·운영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검토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규정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신설규정은 민원인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

의안 번호	91
----------	----

제출년월일 : 2004. 2. 1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 시행(2003.1.1.)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공포시행(2003.7.25.)되어, 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안 제2조)

나. 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내지 제9조)

-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구성한다.(안 제4조제1항)
-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안 제4조제2항)
- 직능별 정수를 구의원 3인, 구공무원 3인,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식전과 경험이 있는 자로 19인 이내(안 제4조제3항)

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기획단은 4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5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안 제11조제1항)
-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안 제12조제1항, 제2항)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법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 1년 미만인 경우 토지가격의 3/100, 200만원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토지가격의 5/100, 300만원 이하.
 - 2년 이상인 경우 토지가격의 10/100, 500만원 이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 제116조, 제132조, 제144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2003.12.30 ~ 2004.01.19)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제 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3조(기능) 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영 또는 이 조례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다른 법, 영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5.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조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원 3인 이내
 2. 구 공무원 3인 이내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9인 이내
-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 ⑨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 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과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관한 사항의 사전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토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 ②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④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인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개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11조(기획단의 구성) ①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5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기획단의 운영)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3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②기획단위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 등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 등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6조(과태료 부과징수) ①법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별도로 징수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소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 제22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 제38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상”을 “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한다.

4. 제38조제5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한다.

③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 제22조제4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3. 제22조제1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금액) (제 17조 1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계법령	부과기준	한도금액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용계획 착수일로부터 아래 기간동안 방치 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용도나 형태로 이용한자(단, 관계법령·규정 등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에 소요한 기간은 산입 하지 않음)	법 제144조제2항 제2호		
가. 1년 미만		토지가격의 3/100	200만원이하
나. 1년 이상 2년 미만		토지가격의 5/100	300만원이하
다. 2년 이상		토지가격의 10/100	500만원이하

※ 부과기준 중 토지가격은 과태료부과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며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기 이전에는 전년도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3.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2월 23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102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4. 3. 2.) 상정 의결